

2020년 제9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30-5 번지 (공동주택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0.10.22.~10.23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케이비부동산신탁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30-5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27,268.9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중심상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2,327.89㎡	건폐율	45.97 %	층수 지하 : 4층 / 지상 : 46~49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	구 조	PC구조, SRC조	건축물 동수 4동
	최고높이	160.4 m	용적률	610.06 %	연면적 합계 242,370.82 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○ 구조심의를 의해 변경되는 사항이 관련 착공신고 도서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함 ○ 엄해에 대한 관련 피복규정을 확인하시고 적정한 피복두께가 확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○ 타워부 외부기둥의 기둥축소량이 우려되므로 현장 시공시 부가응력의 발생 여부를 항상 확인 할 필요가 있으므로, 관계기술자 협업계약서를 첨부하시고 부등축소에 대비하여야 함 ○ 3층의 X15~X16/Y1 장스팬 단순보 3B15등은 장기처짐에 대해 단면 검토하여야 함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			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0년 제9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1-28 외3필지 (공동주택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0.10.22.~10.23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코리아신타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1-28	관련지번	21-29, 21-36, 21-37	
	대지면적	4641.20 m²	용도지역(지구,구역)	준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2,318.465 m²	건폐율	49.95 %	층수 지하 : 2층 / 지상 : 10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	구 조	RC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	40 m	용적률	279.88%	연면적 합계 21,076.31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○ 구조계산서상의 3D 해석모델을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서에 따라 수정하기 바람 ○ 송도지역은 바다를 매립한 지역으로서 지하층의 경우 염해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지상층 보다는 지하층 구조 설계시 피복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0년 제9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588-B 번지 (창고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	2020.10.22.~10.23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동양목재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송도동					
	지 번	588-B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	12,815.00 m²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준공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7,412.76 m²	건폐율	57.84 %	층수 지하 : 0층 / 지상 : 3층	
	주 용 도	창고시설	구 조	RC,PEB구조	건축물 동수 1 동	
	최고높이	10.29 m	용적률	66.50%	연면적 합계 8,521.78 m²	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○ 사무공간과 창고지붕의 연결부에 슬롯으로 변위거동을 허용하였으므로 누수방지를 위해 건축줄눈을 설치하기 바람 ○ 송도지역은 바다를 매립한 지역으로서 지하층의 경우 염해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지상층 보다는 지하층 구조 설계시 피복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	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O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0년 제9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4호 안건: 중구 중산동 1875-1 번지 (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	2020.10.22.~10.23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엠에스산업개발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					
	지 번	1875-1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	1,848.90 m²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중심상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093.67 m²	건폐율	59.15 %	층수	지하 : 4층 / 지상 : 10층
	주 용 도	근린생활시설	구 조	일반철골조	건축물 동수	1 동
	최고높이	66.00 m	용적률	543.80 %	연면적 합계	16,097.91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○ 부력에 대하여 구조물 자중에 의한 저항방식으로 변경함에 있어 기존 지하벽체의 지하수위 증가나 우수기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	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